

의안번호	2202040
의 퇴 인	조승래 의원
회 답 일	2024. 8. 5.
추계번호	24B2204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2항	특구육성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5.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다) ※ 현행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인력의 양성 및 유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 5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제5호의2 신설) 5의3.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제5호의3 신설) 7.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 위한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 현행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여건 조성”을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개정	의무규정
2	안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제2항	특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14.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 위한 환경조성계획 ※ 현행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定住)를 위한 환경조성계획”을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 위한 환경조성계획”으로 개정	의무규정
3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분야와 융합 기술분야 등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및 사업화 지원 인력을 양성·유치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현행 “특구에 있는 대학에 대한 인력 양성 시책”을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에 대한 인력 양성·유치 시책”으로 개정	의무규정
4	제22조의3(문화예술·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화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에 한정한다), 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하 “문화예술·관광시설”이라 한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Ⅱ.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6조(특구육성종합계획) 제2항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안 제6조의2(특구개발계획) 제2항							
3	제22조의3(문화예술·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신설							
4	제10조(특구의 전문 연구개발 인력 등의 양성 및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체계의 구축) 제1항	미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전문 연구개발 인력 양성, 대학·연구소·기업 간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기 반영되어 있어, 기존 사업비로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 유치·활용을 위한 내용(제도개선·수립, 협력사항 등)을 포함 가능 (단위: 백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사업명</th><th>사업개요</th><th>2024예산</th></tr> </thead> <tbody> <tr> <td>연구개발 특구육성 (4632-401)</td><td>(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지원) 연구개발특구내 공공연구성과의사업화및 창업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육성 (100,332백만원)</td><td>5,000 (이노폴리스 캠퍼스¹⁾)</td></tr> </tbody> </table> 주 1) 특구내 거점대학의 혁신자원(기술/인력/창업 인프라 등)을 활용한 기술창업 활성화 사업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업명	사업개요	2024예산	연구개발 특구육성 (4632-401)	(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지원) 연구개발특구내 공공연구성과의사업화및 창업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육성 (100,332백만원)	5,000 (이노폴리스 캠퍼스 ¹⁾)
사업명	사업개요	2024예산						
연구개발 특구육성 (4632-401)	(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지원) 연구개발특구내 공공연구성과의사업화및 창업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클러스터육성 (100,332백만원)	5,000 (이노폴리스 캠퍼스 ¹⁾)						

2. 상세 사유

□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특구개발계획 (안 제6조제2항 및 안 제6조의2제2항)

- 개정안은 특구육성종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5호의2 신설),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호의2 신설)을 추가하고, 현행 특구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을 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특구개발계획 포함 사항 중 외국인의 투자유치 및 정주 여건 조성을 외국인의 투자 활성화 및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을 위한 여건 조성으로 변경하는 것임

- 개정사항 중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과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에 관한 사항은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는 예산사업이 이미 편성되어 있어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은 현 시점에서 사업 대상 선정 기준 및 지원 규모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곤란

[표 1] 개정안에 따른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특구개발계획 포함 사항

전문인력 양성 시책		비고
안 제6조제2항 제5호	연구장려금 등 우대조치를 포함한 전문인력 양성 및 유치에 관한 사항	연구장려금 제공 대상 및 지원 범위 등 우대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현 시점에서는 알 수 없어 추가재정소요 추계 불가
안 제6조제2항 제5호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경력 과학기술인력의 활용에 관한 사항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의 기준 및 활용 수준, 활용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범위 등 시책의 구체적인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현 시점에서는 파악 불가
안 제6조제2항 제5호의3	특구의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문 인력과 사업화 지원 인력의 수급 동향 조사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4632-402) 세부사업 중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내역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연구개발특구 통계조사 실시('24 예산 448백만원)
안 제6조제2항 제7호 및 안 제6조의2제2항 제14호	해외 고급 과학기술 인력의 유치·활용에 관한 사항	연구개발특구육성(R&D)(4632-401) 세부사업 중 기업 창업·성장지원 내역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글로벌기술사업화 및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해외연구자 네트워킹 등을 추진 중('24 예산 1,575백만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참고로,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특구개발계획의 포함 사항 변경을 위한 계획 수립 예산의 추가 소요와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추가재정소요 없이 기 편성된 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를 활용하여 개정 사항을 반영한 종합계획 등의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임

[표 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특구개발계획 수립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 개요	2024 예산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4632-402)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특구 지역 내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구재단 운영·관리 등 (18,485백만원)	280 (정책연구비)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문화예술·관광시설에 대한 지원 (안 제22조의3 신설)

-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구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특구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하는 문화시설, 관광·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체육시설이 우선 설치 또는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으로, 향후 특구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 시점에서는 문화예술·관광시설의 유치 여부 및 규모 등을 파악할 수 없어 비용추계가 곤란함
- 참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입주기관 협의체, 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 내 소통창구 등을 통해 복지환경 조성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필요시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를 추진한다는 입장

[표 3] 특구 입주 및 민원지원 관련 예산 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내역사업 개요	2024 예산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4632-402)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특구 지역 내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구재단 운영·관리 등 (18,485백만원)	656 (특구입주 및 민원지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경제비용추계과	박인재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박인재	02-6788-4650	powerreset@assembly.go.kr

[참고자료 1] 연구개발특구 현황¹⁾

□ 특구 개요

- (목적) 연구개발특구를 혁신클러스터로 육성하여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사업화를 촉진함으로써 국가 성장동력 창출에 기여
- (특구 지정) 공공연구기관의 신기술 창출 및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된 지역으로, '05년 대덕특구 지정 후, 4개 광역특구*, 14개 강소특구**로 확대
 - (광역특구)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40개(출연연 3개 이상), 대학 3개 이상 집적화, R&D 투자·특허 비중 높은 지역*
 - * 광주('11), 대구('11), 부산('12), 전북('15)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지정
 - (강소특구) R&D 역량, 기술특허 등 핵심역량을 보유한 1개 이상의 기술핵심기관(대학, 출연연 등)이 소재한 지역*
 - * ('19) 안산, 김해, 진주, 창원, 포항, 청주 / ('20) 울주, 천안·아산, 군산, 구미, 홍릉, 나주 / ('22) 인천(서구), 춘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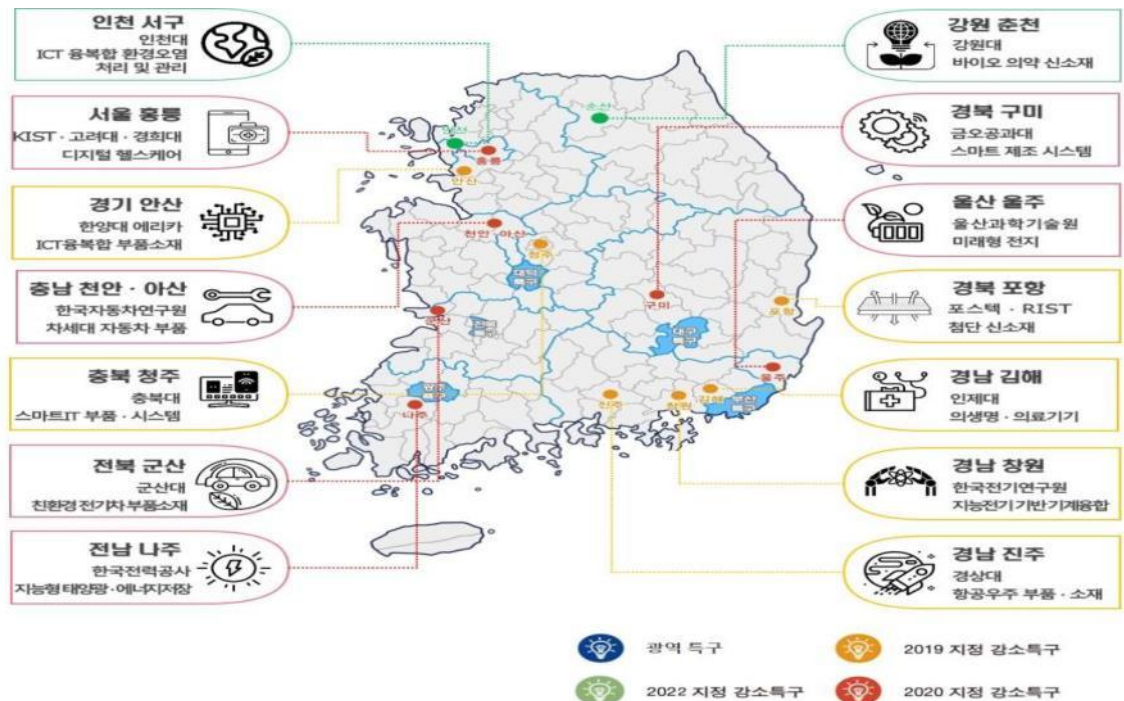
구분		지정	범 위	총면적	특화 분야
광역 특구	대덕	'05.07	대전시 유성구 등 일원	49.7km ²	IT, 나노 융복합, 바이오 등
	광주	'11.01	광주시 및 장성군 일원	18.6km ²	친환경자동차 부품소재 등
	대구	'11.01	대구시 및 경산시 일원	19.4km ²	의료용 융복합기기 등
	부산	'12.11	부산시 강서구 등 일원	12.6km ²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등
	전북	'15.08	전주시, 정읍시, 완주군 일원	16.1km ²	농생명 융합, 융복합 소재부품 등
강소 특구	안산	'19.08	안산 상록구, 단원구 일원	1.73km ²	ICT융복합 부품소재
	김해	'19.08	김해 주촌면, 풍유동, 명법동 일원	1.13km ²	의생명 · 의료기기
	진주	'19.08	진주 가좌동, 충무공동 등 일원	2.17km ²	항공우주부품 · 소재
	창원	'19.08	창원 성산구 일원	0.82km ²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포항	'19.08	포항 남구, 흥해읍 일원	2.72km ²	첨단 신소재
	청주	'19.08	청주 서원구, 청원구 일원	2.85km ²	스마트IT부품 · 시스템
	구미	'20.08	구미 거의동, 신평동 등 일원	2.57km ²	스마트 제조 시스템
	홍릉	'20.08	서울 성북구, 동대문구 일원	1.38km ²	디지털 헬스케어
	울주	'20.08	울산 울주군 일원	3.01km ²	미래형 전지
	나주	'20.08	나주 빛가람동, 동수동 등 일원	1.69km ²	지능형 태양광·에너지저장
	군산	'20.08	군산 미룡동, 소룡동 등 일원	2.70km ²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천안·아산	'20.08	천안 서북구 등, 아산 배방읍 등 일원	1.32km ²	차세대 자동차 부품
	인천	'22.06	인천 서구, 미추홀구, 연수구 등 일원	2.22km ²	환경오염 처리 및 관리
	춘천	'22.06	춘천 효자동, 후평동, 동내면 등 일원	1.86km ²	바이오 의약 신소재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

□ 광역 특구



□ 장소 특구



[참고자료 2] 연구개발특구 지원 사업 현황²⁾

□ 연구개발특구육성(R&D)

- 연구개발특구 내 공공 연구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하는 혁신 클러스터 육성 (100,332백만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코드)	내역사업명	사업개요	2024 예산
연구개발특구육성(R&D) (균특회계/4632-401)	전략기술 연구성과 사업화	지역의 광역특구별로 국가전략기술 특화분야를 지정하고 지역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수한 전략기술의 발굴부터 창업연구소기업의 성장을 집중 지원	43,800
	특구 혁신성장 스케일업 지원	과학기술 혁신기반이 다져진 지역산업 특화분야에 대하여 실증, 스케일업 등 상품화 이전의 R&BD를 중점 지원	31,450
	강소특구 육성	강소특구 내 연구성과 사업화 및 창업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성장이 선순환 기초지자체 단위 소규모, 지역 주도 혁신클러스터 육성	22,400
	기획평가관리비	특구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획·평가·관리	2,682
합 계			100,332

□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

- 특구 지역 내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특구재단 운영·관리, 특구 규제샌드박스 제도 운영 등 (20,285백만원)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코드)	내역사업명	사업개요	2024 예산
연구개발특구운영 및 인프라지원(비R&D) (균특회계/4632-402)	특구 기반시설 구축	연구개발특구 지역 내 기술사업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지원	700
	특구진흥재단 운영·지원	연구개발특구 조성 및 육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특구재단 운영 및 관리(특구재단 인건비·경상비 포함)	18,485
	연구개발특구 규제샌드박스 운영	특구 규제샌드박스(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운영을 지원하여 특구 내 연구자·기업의 신기술 사업화 활성화	1,100
합 계			20,285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출 자료